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 입법 동향

Vol. 41 (2021. 12. 20 ~ 12. 24)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ESG/기업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내용에 기후위기 대응, 환경 문제 등 비재무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함.
	기업	②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수거를 권고·수거를 명령한 경우, 보고 및 자료제출과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며 이를 공표하도록 함.
국회 계류안	건설/부동산	③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타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공포 법령	기업	④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시기를 1년씩 연기.
입법/행정 예고	IP/ 공정거래	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위탁기업에 벌점 부과 기준 마련 등.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유의동 (국민의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임을 강조하며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였음. 이처럼 최근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데 있어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비재무적 성과지표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ESG)가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주요 지표로 강조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ESG 정보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단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정보제공만을 명시하고 있어, 이는 ESG를 고려한 투자에 장애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현재 재무 정보 중심인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내용에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환경 문제, 부패 근절,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사회 대응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비재무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V1C1P2S0P8A1I1G2R3B4C7V0N3A7		21.12.14.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정동만 (국민의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의 보고만으로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 사실이나 명령 사실의 공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소비자가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며,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사실과 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43조).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A1D1Q1H0Q3J1N7D3B9J4V3X8R4I6		21.12.15 제안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20여 년간 총사업비 선정기준에 대한 조정이 없었던바, 국가경제 및 재정규모의 성장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선정기준 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업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을 상향(총사업비 1,000억원·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하여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과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V0A0X6Q1Y2A1W0G1O9Z1Y6L9H4U0	아시아경제 21.12.12. 건설업계 "예타 기준, 총사업비 500억→ 1000억원으로 상향을"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21215461730785	20.06.12. 제안 20.09.21.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20.09.22. 소위 상정 20.11.11. 소위 상정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의 작성 ·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시켜 운영해야 하는 사업연도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3년에서 2024년으로, 그 밖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4년에서 2025년으로 1년씩 유예하려는 것임. 출처:https://www.law.go.kr/법령/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경제 21.12.14.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1년 연기돼 2023년 시행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121472556	21.12.21. 시행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개정이유 비밀유지계약 도입 등을 통해 수·위탁거래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1호, 2021.8.17. 개정, 2022. 2.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벌점의 부과기준 개정(안 제5조의4 및 [별표] 개정) 1) 법 제21조의2 신설 및 제27조 제7항 개정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위탁기업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4) 2) 시행규칙 별표(벌점의 부과기준)의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법 제21조의2제1항 위반행위를 추가 나. 비치서류의 확대(안 제11조) 1) 법 제39조는 수·위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위탁거래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법 제21조의2 신설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가 도입됨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서를 수·위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하여야할 서류에 추가 출처: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6470?pageIndex=2		21.12.13. ~ 22.01.24.

중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조선일보][사설]기업가 정신 위축시키는 중대재해법 재고해야(2021.12.22)

https://www.chosun.com/opinion/podium/2021/12/22/QEG2277NDBBNDBEMGAPPFAIGB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주요내용 전경련이 OECD 37개국을 대상으로 기업 활력 등을 종합한 '기업가 정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함. 기업계가 당면한 이슈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이 법은 추상적이고 애매한 의무를 규정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면책 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과잉 입법 논란이 일고 있음. 엄벌 위주로 처벌한다고 산업 현장 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기는커녕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평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재고해야함.

[한국경제][사설]중대재해법 피하려고 벌어지는 온갖 진풍경들(2021.12.15)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21509351

주요내용 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장관의 형사처벌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직원 3명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했고, 국세청도 본청과 각 지방청에 대응 조직을 꾸림. 국토교통부와 관세청도 법 발효 이전에 조직구성을 마무리할 방침. 법 하나 탓에 정부 전 부처에서 조직이 만들어진 사례가 있을까 싶음. 민간분야는 무한책임을 피하려고 '가게무샤(그림자무사)'대표를 세워 '우회경영' 방안까지 고민 중. 주한 외국기업인들 사이에 '오잉크(OINK:Only In Korea)리스크'라는 은어가 돌더니 한국 법인의 최고경영자 임명을 포기하는 분위기. 여야가 대선 전에 머리를 맞대야 할 일은 '100조원 추경'같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산업현장의 불안을 지금이라도 살피는 것.

[조선일보][기사]법무부, '중대재해 수사검사 간담회' 개최…"법 시행 대비"(2021.12.22)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12/22/CDFEVYPCBFD6BDDX2Y22JXAFT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주요내용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재로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를 개최해, 중대재해와 안전사고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개선사항을 점검함.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안전관리 문제점 ▲공소유지 관점에서 초동수사 시 조치 필요사항 ▲수사 시 안전주의의무·인과관계 등 공판 예상 쟁점을 대비해 필요한 확인사항 ▲동일 유형의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수사모델 구축 등이 논의됨.

[매일경제][기사]내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코로나19 백신 맞고 죽으면 어떻게?(2021.12.22)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2/1194799/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지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음. 법조계에 따르면, 제조물책임법의 면책사유에 따라 백신부작용을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관계자 처벌이나 손해배상 등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조물의 결함'의 의미를 보려면 민사법인 제조물책임법을 참고해야함, 형사법인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음.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ESG 자문그룹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76
E : sblee@draju.com

기업부문



안호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4
E : hbahn@draju.com

건설/부동산팀



전재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8
E : jkjun@draju.com

IP부문



최종선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88
E : jschoi@draju.com

공정거래부문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49
E : smkoo@draju.com